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서

【 문진국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3181호 】

2018. 8.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송 주 아

I. 개 요

1. 경 과

2018년 4월 20일 문진국위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18년 4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최근 커피전문점 등의 성장으로 성인 1인당 커피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1회용 컵 사용량도 급증하고 있으며, 1회용 컵의 부적정한 폐기로 인하여 환경오염, 자원의 낭비 등이 심각해지고 있음.

이에 사용된 컵의 수거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고,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또한 보증금 등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 등을 위해 정부,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를 두고 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등에 관한 업무는 신설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전담하도록 하여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1회용 컵 용기에 대해 보증금을 부과하고, 1회용 컵을 되가져오면 이를 반환하도록 함(안 제1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
- 나. 1회용 컵을 사용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이를 재활용하기 위한 운반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처리지원금)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15조의2제4항제2호).
- 다. 정부,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별도의 심의기구인 자원순환보증금 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보증금,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비용의 부과·징수, 미반환 보증금 운용 관리 등에 대한 검토와 감시를 강화함(안 제15조의5제1항).
- 라. 기존 한국순환자원 유통지원센터에서 하던 보증금, 취급수수료 등의 관리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전담하도록 함(안 제15조의6).

II. 검토의견

1. 총괄 : 1회용 컵 보증금제도 도입 필요성 검토

현행법¹⁾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식품접객업 내에서 1회용 컵²⁾ 사용을 억제³⁾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식품접객업소 이외에서 소비할 목적(테이크아웃), 환경부와 1회용품 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이행한 경우 등에는 1회용 컵의 사용이 가능함⁴⁾⁵⁾.

- 1) 법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2) 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1회용 종이컵은 2008. 6. 30. 규제대상에서 제외됨.)

3)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제4조 관련)’

시설 또는 업종	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가. 1회용 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나.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다.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 라.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마.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바. 1회용 비닐식탁보	사용억제
	사.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4) 법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2.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1회용 컵을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용기의 회수·재활용을 위한 보증금을 포함(이하 “보증금”)하도록 하고, 1회용 컵을 반환하는 소비자에게는 보증금을 반환하고 회수된 컵의 재활용을 위해 이를 운반 및 처리하는 자에게 처리지원금을 지급하여 재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또한, 보증금의 전담관리기관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하여 보증금 및 처리지원금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보증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정부,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에서 보증금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함.

-
- 5) 동법 시행령 제8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등) ④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가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환경부장관과 체결하여 이행하는 경우
 2. 사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된 1회용품을 90퍼센트 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3. 제2항제1호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으로서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매장 면적 기준을 33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로 정한 면적 이하인 경우로 한다.

현행법은 매장 내에서의 1회용 컵 사용을 억제하도록 규정(종이컵은 제외)하고 있으나, 최근 커피전문점 및 음료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⁷⁾하고 있고, 테이크아웃 소비문화가 확산되면서 1회용 컵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 표 > 1회용컵 사용량 현황⁸⁾

(단위 : 천개)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9,100,291	17,929,842	21,421,576	26,034,899	27,130,226	24,844,439	25,670,282
종이	17,482,417	16,956,417	19,218,750	22,999,083	25,061,777	22,193,487	23,062,015
합성수지	1,617,874	973,425	2,202,826	3,035,816	2,068,449	2,650,952	2,608,267

출처: '1회용품 사용실태 조사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14.11월, 자원순환사회연대)' 참조

1회용 컵은 음료 잔재물과 함께 배출되어 오염되기 쉽고, 다양한 재질⁹⁾로 구성되어 있어 폐기한 이후 분리선별 및 재활용에 한계¹⁰⁾가 있으므로, 소비자의 1회용 컵 사용을 사전적으로 억제하고, 자발적인 회수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소비자의 1회용 컵 사용 억제를 유도하고

7) 국내 커피수입량 : 9억 1천톤('05) → 11억 7천톤('10) → 13억 8천톤('15)

음료판매점 : 27,768개소('09) → 42,458개소('12) → 55,693개소('14)

8) 전체 1회용 컵 사용량에서 가정사무실 등에서 사용되는 저평량 종이컵 사용량을 제외하여 산출하였으며, 2013년 이후 사용량은 이전 자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환경부에서 추산

9) (차가운음료 컵·뚜껑) PET, PS, PP, (뜨거운음료 뚜껑) PS, (빨대) PP

10) 환경부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점에서 판매되는 1회용컵 전체 사용량 약 60억 6,800만개 중 약 8%에 불과한 4억 8,000개가 재활용되는 것으로 추정('15년 기준)

커피전문점 등 판매자에 대해서는 1회용 컵을 회수하여 재활용사업자에게 적정 인계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1회용 컵의 회수·재활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봄.

환경부도 커피전문점 등 판매자를 중심으로 한 역회수체계를 구축하고 사용량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만,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 및 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주요 취지는 1회용 컵의 사용을 억제하고, 보증금 반환을 통해 판매자가 1회용 컵을 역회수하여 재활용업체에게 인계하도록 함으로써 1회용 컵의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하기 위함임.

< 표 > 1회용 컵 재활용 용도

품목	재생품목
종이컵	화장지, 일회용 티슈
PET 플라스틱컵	섬유(극세사 사출)
PS 플라스틱컵	전자기기 부품 사출용 펠렛
박스, 컵 홀더	재생지로 재활용

그런데, 주로 일정한 장소에서 소비하는 맥주병, 소주병 등 빈용기와 달리 1회용 컵은 소비자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음료를 소

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일정액의 보증금을 부과한다고 하여 소비자가 편리성을 포기하고 머그컵 등 다회용 용기를 사용할지 의문임.

1회용 컵은 위생상 재사용하는 것이 어렵고 주로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게 되는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로 제조되었거나 재활용 과정에서 다른 물질과 혼합되는 경우에는 1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재활용 효과가 저하될 수 있음.

또한,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운영을 위해 보증금 반환 및 관리시스템 구축, 보증금 전담 관리기구 설치, 보증금제도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동 제도 운영을 통해 제반 비용 대비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

둘째, 판매자가 1회용 컵 보증금제도 도입을 빌미로 보증금 부과액을 초과하여 음료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소비자 비용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

참고로, 환경부는 2017년 1월 빙용기 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업계 수익과 무관하게 주류가격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하고 이에 대해 주류가격과 빙용기 반환실태 등 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¹¹⁾.

셋째, 보증금제도 도입에 따라 판매업자는 1회용 컵을 분류, 보관할 장소를 마련하고, 회수된 1회용 컵의 선별·보관, 다회용 컵 세척 등 매

11) 환경부 보도자료 ‘빙용기보증금 빌미 가격 인상업체, 민·관 감시 강화(2017. 1. 23. 배포) 참조

장 내 업무량이 증가됨에 따라 인력을 확충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회수한 1회용 컵을 즉시 인계하지 않고 장시간 적치할 경우 악취 등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넷째, 현재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도입한 외국 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¹²⁾이며, 환경부는 2002년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¹³⁾하고 1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¹⁴⁾하였으나, 제도의 효과성 미흡, 미반환보증금(환불되지 않은 1회용 컵·용기의 판매금액) 관리의 투명성 논란 및 법에 근거하지 않은 국민의 편익침해라는 비판 등으로 2008년 3월 동 제도를 폐지한 사례가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¹⁵⁾.

이러한 점을 볼 때, 동 개정안은 일반 소비자 및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1회용 컵 보증금제도의 성공 여부도 이들

12) 다만, 1회용 용기에 대한 보증금 부과 사례는 있음.

- (EU) 독일·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네덜란드 등 10개국에서 유리·PET·캔 등에 대한 보증금제도를 운영중이며(맥주, 생수, 탄산음료 등 용기), EU는 보증금제도 등을 통해 플라스틱 음료 병을 90% 이상 수거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저감정책을 발표함(18.5.28.)
- (미국) 캘리포니아·코네티컷·하와이·뉴욕 등 10개주에서 유리·PET·캐내 등에 대한 보증금제도를 운영중임(맥주, 생수, 탄산음료 등 용기)

13) 39개 브랜드, 3,500여개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과 자발적협약을 통해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도입(1회용 컵 개당 50~100원 보증금 부과)

14) 【참고자료 1】 2002~2008년 1회용컵 보증금제도 자발적 협약 사례 참조

15) 현재에도 환경부는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 21개 브랜드와 1회용 컵 사용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2008년 이후 보증금제도 관련 내용은 제외됨.

※ 현재 환경부-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간 자발적 협약 주요 내용

- 유색 및 전면 인쇄된 1회용 컵 사용 자재, 분리배출 및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의 컵 사용 노력
- 다회용컵 이용시 인센티브 제공 및 1회용품 감량 캠페인, 길거리 수거함 설치 등 사회공헌 활동
- 1회용 컵 및 부속품(빨대, 홀더 등)을 재질별로 분리 배출하고 전문 회수·재활용업체가 회수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함
- 1회용컵 회수·재활용량 등 협약 내용의 이행현황을 반기마다 환경부에 제출

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렸다고 할 수 있으므로,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소비자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¹⁶⁾

참고로, 환경부가 2017년 1회용품 감량 정책 수립을 위해 운영한 ‘1회용품 정책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정책협의회’¹⁷⁾ 논의 결과, 1회용 컵 감량과 회수·재활용 촉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1회용컵 보증금제도 도입시 ① 보증금의 적정수준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조사, ② 소비자 부담 증가 요인 억제, ③ 보증금 제도 도입 필요성과 소비자의 역할에 대한 홍보 강화, ④ 보증금이 부과된 컵과 부과되지 않은 컵이 혼합되어 반환되는 문제 해결, ⑤ 미반환 보증금 집행관리 강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16) 이와 관련 환경부는 그간 “1회용품 정책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정책협의회” 운영, 소비자 인식 설문조사(만 20세 이상 성인 2,005명 대상) 실시, 커피전문점 등(21개 브랜드)과 자발적 협약 논의시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도입 계획을 설명 등을 통해 일부 의견수렴을 한 바 있으나, 동 개정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봄.

※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17.10.26~11.4.)

- 응답자의 89.9%가 보증금 제도 도입에 찬성
- 제도 도입시 61.8%가 머그컵을 더 많이 사용할 의향이 있고, 69.2%가 매장 밖으로 가져간 1회용 컵을 반납하겠다고 반납

17) 환경부는 2017.7월-8월간 환경부,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지방자치단체(서울시), 자원순환사회연대, 스타벅스 등 유관기관 전문가가 참여한 ‘1회용품 정책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정책협의회’를 운영함.

**< 표 > ‘1회용품 정책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정책협의회’ 논의 결과
보증금 제도 도입시 고려 사항**

- ① 보증금의 적정수준(컵 반환 유도효과가 있으면서 소비자 부담이 최소화되는 수준으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금액)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조사
- ② 보증금 이외 소비자 부담 증가 요인 억제(보증금을 빌미로 한 커피가격 인상),
- ③ 보증금 제도 도입 필요성(공익적 편익)과 소비자의 역할에 대한 홍보 강화
- ④ 비보증금 컵의 부적정 반환에 대한 관리(보증금 컵과 비보증금 컵의 구분)
- ⑤ 보증금의 부과 및 환불에 대한 객관적 관리시스템(보증금관리시스템)
- ⑥ 미반환보증금관리시스템(공익적 목적의 제3자 관리시스템) 등

한편, 1회용 용기 보증금제도 도입과 관련한 법안 2건¹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병합하여 심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18) 문진국 의원 대표발의(2016. 8. 12.),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2017. 6. 15.)

2. 조문별 검토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도입 여부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안에 따라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 조문별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함.

가.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도입(안 제15조의2 등)

현행법¹⁹⁾은 빈용기²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그 제품에 사용된 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 가격이나 수입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1회용 컵을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 가격에 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여 1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제도를 도입하고(안 제15조의2제1항제2호), 이에 따라 현행법상 “빈용기보증금”을 1회용컵 보증금도 포함하여 “보증금”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임(안 제15조의3, 제15조의4).

19) 법 제15조의2(빈용기의 재사용 촉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그 제품에 사용된 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가격이나 수입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빈용기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 동 법 시행령 제17조(빈용기보증금 부과대상 용기)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주류(酒類)
 - 가. 「주세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발효주류
 - 나. 「주세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증류주류
2. 음료류
3.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

< 표 >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절 폐기물의 분리·수거 및 <u>재사용</u> 촉진 등</p> <p>제15조의2(빈용기의 <u>재사용</u> 촉진) ①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그 제품에 사용된 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가격이나 수입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빈용기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다.</u></p> <p>② 환경부장관은 용기의 <u>재사용</u>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제품에 사용된 용기 중에서 규격이 통일되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이하 “표준용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표준용기를 제품에 사용하려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이 포</p>	<p>제2절 폐기물의 분리·수거 및 <u>자원의 순환</u> 촉진 등</p> <p>제15조의2(빈용기·1회용 컵의 <u>자원 순환</u> 촉진) ① <u>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기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 수입 또는 판매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보증금”이라 한다)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보증금 포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u></p> <p>1. <u>반복 사용이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u></p> <p>2.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1회용 컵을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u></p> <p>② -----<u>재사용 또는 재활용</u>----- ----- ----- ----- ----- ----- ----- ----- ----- ----- -----</p> <p>③ <u>제1항제1호의 제조·수입하는 자,</u></p>

함된 제품의 제조자 등은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빈용기보증금액은 용기의 제조원가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이하 “빈용기재사용생산자”라 한다)는 도매업자나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빈용기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비용(이하 “취급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한다. 이 경우 취급수수료를 산정함에 있어 물가 변동 등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빈용기보

제1항제2호의 판매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용기 및 1회용 컵을 반환하는 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보증금액은 용기와 1회용 컵의 제조원가, 자원의 순환 이용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증금대상사업자는 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 용기와 1회용 컵의 회수, 선별, 보관, 재활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을 산정하는 데에 물가변동 등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이하 “빈용기재사용생산자”라 한다)는 도매업자나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에게 반복사용이 가능한 빈용기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비용(이하 “취급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판매자는 1회용 컵 등의 재활용을 위하여 이를 운반 및 처리하는 자에게 해당 비용(이하 “처리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증금의

증금의 반환 및 취급수수료의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용기재사용생산자는 제28조의2의 유통지원센터로 하여금 반환된 비용을 확인한 후 이에 해당하는 비용기보증금 또는 취급수수료를 반환 또는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비용기재사용생산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비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에 비용기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

⑦ 용기의 규격별 비용기보증금의 반환과 취급수수료의 지급 등 비용기의 원활한 회수·재사용을 위하여 비용기재사용생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비용기보증금 잔액의 용도)

① 제15조의2에 따라 비용기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이하 “미반환보증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비용기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2. 비용기의 보관, 수집소의 설치 및 회수용 박스 제작
3. 비용기의 효율적 회수와 재활용

반환, 취급수수료와 처리지원금의 지급, 관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증금 대상 사업자는 제15조의6의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보증금, 제품의 출고 및 판매,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보증금과 취급 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 등을 반환 또는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해당하는 보증금대상사업자는-----
보증금이-----
용기와 1회용 컵에 보증금-----
-----.

⑦ 제4항에 따른 취급수수료의 처리 비용 지급 등 용기와 1회용 컵의 원활한 회수·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보증금 잔액의 용도) ① ---

-----보증금-----

-----.

1. 비용기와 1회용 컵-----

2. 비용기와 1회용 컵-----

3. 자원순환촉진을 위한 비용기와 1

방안의 연구·개발

4. 전년도에 받은 비용기보증금액보다 비용기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진(補填)

4의2. 비용기의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

<신 설>

5. (생략)

② 미반환보증금의 산출, 사용계획 및 결과의 보고, 비용기의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4(비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보상) 환경부장관은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소매업자 중 비용기보증금 포함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가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비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회용 컵의 회수, 재사용과-----

4. -----보증금액보다 보증금-----

4의2. 비용기와 1회용 컵-----

4의3. 보증금과 취급수수료 및 처리지원금의 집행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5. (현행과 같음)

② -----비용기와 1회용 컵의-----

제15조의4(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 -----

-----보증금-----

-----보증금을-----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

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1. ~ 4. (생략)
- 5. 제15조의2에 따른 비용기재사용생산자,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

- 6. ~ 14. (생략)
- ② ~ ④ (생략)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4. (생략)
- 5.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비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 6.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1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비용기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표시 등을 하지 아니한 자

- 7. ~ 16. (생략)
- ②·③ (생략)

-----.

- 1. ~ 4. (현행과 같음)
- 5. -----보증금대상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6. ~ 14.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1조(과태료)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 5. -----보증금을-----
- 6.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을-----

6의2. -----보증금의-----

- 7. ~ 16. (현행과 같음)
- ②·③ (현행과 같음)

첫째, 안 제15조의2제1항은 1회용 컵에 대해서도 보증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빈용기의 경우 임의규정으로 판매자가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반면, 1회용 컵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증금을 포함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명시함.

현행법상 빈용기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²¹⁾ 빈용기보증금을 부과하거나 동법 제16조²²⁾에 따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이하 “EPR”)²³⁾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 중에 선택²⁴⁾할 수 있음.

개정안은 1회용 컵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증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EPR 제도의 경우 재활용 촉진 효과는 있으나 이를 통한 사용량 감량 등의 효과가 크지 않고, 1회용컵 제조업자 또는 음료 판매업자 대부분이 EPR 의무 면제 대상인 10억 미만의 사업자에 해당

21) 동 법 시행령 제17조(빈용기보증금 부과대상 용기)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주류(酒類)
 - 가. 「주세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발효주류
 - 나. 「주세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증류주류
2. 음료류
3.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

22) 법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① 생산단계·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23) 생산자책임재활용(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임.

24) 동법 시행령 제23조(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②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중 법 제15조의2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빈용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해당 연도에 그 제품에 사용한 용기량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양을 재활용의무량으로 한다.

하여 EPR 제도 도입의 실익이 없다고 보기 때문임.

따라서, EPR 대상에 1회용 컵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와 연계하여 1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 부과를 재량행위 또는 기속행위로 규정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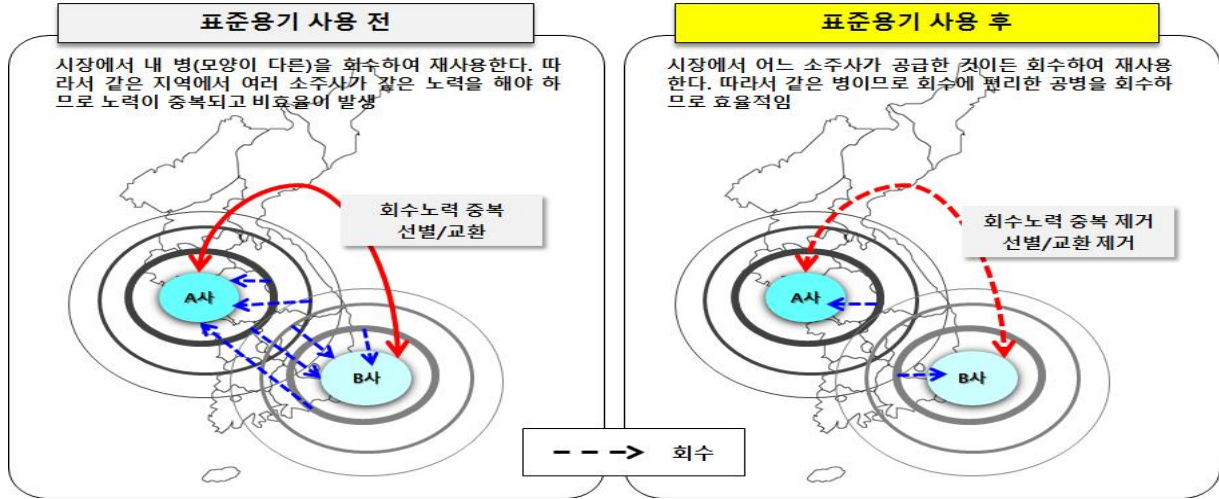
둘째, 안 제15조의2제2항은 빈용기 뿐 아니라 1회용 컵에 대해서도 표준용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표준용기 제도는 생산자간 동일한 용기를 사용하도록 하여 회수 및 재사용 효율을 높이고 신병 생산 및 선별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 환경부가 지정한 표준용기는 소주(녹색, 360ml), 맥주(갈색, 500ml, 640ml) 등 3종류이며, 12개 생산자가 75개 제품에 사용하고 있음.

< 표 > 현행법상 표준용기 현황

주종	용기종류	참여사	표준용기 연간 출고량	비고
소주	표준용기A (360ml)	10개사 (68개 제품)	32.1억병 ▪ 전체32.8억병 출고('17) ▪ 점유 비중 97.8%	▶ 소주 빈용기재사용생산자 10개사 전체 참여 ▶ 전체 소주 출고량 31.3억병의 99% 참여
맥주	표준용기B, C (500ml, 640ml)	2개사 (7개 제품)	4.0억병 ▪ 전체15.6억병 출고('17) ▪ 점유 비중 25.6%	▶ 맥주 빈용기재사용생산자 3개사 중 2개사 참여 ▶ 전체 맥주 출고량 18.1억병의 22% 참여

< 그림 > 표준용기 사용 효과



개정안은 빈용기 뿐 아니라 1회용 컵에 대해서도 표준용기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용기의 재질, 라벨지 등을 표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증금제도 대상 컵과 미대상 컵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용기의 재질, 라벨지 등을 표준화하여 서로 다른 브랜드의 1회용 컵이 혼합되더라도 재활용이 용이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봄.

다만, 현행 빈용기 표준용기 지정제도는 빈용기 보증금제도를 통해 회수한 빈용기를 재사용하여 제조사간 선별비용 및 신병 생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취지이나,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회수한 1회용 컵을 재사용하기 보다는 재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표준용기 지정제도의 취지와 차이가 있음.

또한, 표준용기 지정제도는 브랜드와 상관없이 어느 매장에서든 1회용 컵을 반환하도록 하는 통합 반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에 실효

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1회용 컵의 경우 마트·슈퍼마켓 등에서 서로 다른 브랜드의 맥주·소주 등을 일괄 구입하고 반환하는 빈용기와 달리 커피 등 음료는 커피전문점 등 각 판매업체에서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유통체계가 다르고, 각 판매업체의 규모, 음료 특성, 매장 여건이 서로 다르므로 통합 반환 시스템 도입으로 실무상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안 제15조의2제4항제2호는 1회용 컵을 사용하는 판매자가 1회용 컵 등의 재활용을 위하여 이를 운반·처리하는 자에게 해당 비용(이하 “처리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⁵⁾.

일반적으로 매장에서 1회용 컵 등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배출하고 지자체에서 수거하게 되는데, 지자체 선별장에서 다른 재활용품과 혼합되어 1회용 컵만 분리하여 선별하기 어렵고 소각장 또는 고형연료제품(SRF) 제조업체로 인계되는 등 적정하게 재활용되지 않고 처리되는 실정임.

개정안은 판매업체가 회수한 1회용 컵을 분리하여 배출하고 전문수집·운반업체에 처리지원금을 지급하여 분리·선별한 1회용 컵을 전문재활용업체에 인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1회용 컵이 다른 재활용품과 혼합되지 않고 전문 재활용업체²⁶⁾에 인계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봄.

25) 현재 1회용 컵 자발적 협약 업체들은 전문 수집·운반업체에게 매장별 1달 기준 약 1,5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26) 종이컵의 경우 일반 폐지에 비해 고급재질로 화장지, 일회용 티슈로 재활용되고, 플라스틱 컵(PET, PS)의 경우 극세사(PET), 전자기기부품 원료(PS)로 활용되고 있음.

< 그림 > 1회용 컵 처리과정 비교



다만, 동 제도 운영시 처리지원금을 전문 수집·운반업자에게 지급한 후 회수된 1회용 컵이 무단 방치, 소각·매립되지 않고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전문 재활용업체에게 적정 인계되어 재활용되고 있는지 조사·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²⁷⁾에 따르면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물가 변동 등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27) 법 제15조의2(빈용기의 재사용 촉진) ④ 제1항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이하 "빈용기재사용생산자"라 한다)는 도매업자나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빈용기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비용(이하 "취급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한다. 이 경우 취급수수료를 산정함에 있어 물가 변동 등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취급수수료 및 처리지원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하위법령 위임근거가 삭제되어 있는 바 이를 보완해야 할 것임.

넷째, 안 제15조의2제5항은 보증금 대상사업자가 자원순환보증금 관리센터에 보증금, 제품의 출고 및 판매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보증금과 취급 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을 반환 또는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은 “유통지원센터로 하여금 반환된 비용을 확인한 후 이에 해당하는 비용기보증금 또는 취급수수료를 반환 또는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개정안은 유통지원센터(개정안의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확인의무를 삭제하고 있음.

유통지원센터가 보증금·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적정 관리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무상으로는 보증금 대상사업자가 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유통지원센터의 확인 의무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기타 개정안은 1회용 컵에 대한 비용기 보증금 제도 도입에 따라 “비용기보증금”을 “보증금”, “비용기재사용생산자”를 “보증금대상사업자”, “취급수수료”를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봄.

나. 자원순환보증금 관리위원회 및 자원순환 보증금 관리센터
설치(안 제15조의5 신설, 안 제15조의6 신설, 안 제28조의2)

개정안은 빈용기 및 1회용 컵 보증금 관리를 위해 현행법²⁸⁾상 유통지원센터의 빈용기 보증금 관리업무를 삭제하는 대신(안 제28조의2), 보증금대상사업자가 공동으로 “보증금관리센터”를 설립하도록 하고(안 제15조의6 신설), 환경부 고위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15조의5 신설).

< 표 >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15조의5(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p> <p>① 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의 촉진을 위하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증금을 통한 자원의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 2. 보증금,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의 부과·징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3. 미반환보증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8) 법 제28조의2(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조합과 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하고, 제15조의2에 따라 빈용기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지원센터”라 한다)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

<신 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자원순환업무를 주관하는 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 법인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
3.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6(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

① 보증금대상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여야 한다.

②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처리지원금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2.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의 집행 및 관리
3. 보증금 반환과 취급수수료 또는 처

제28조의2(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조합과 빈용기재사용 생산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하고, 제15조의2에 따라 빈용기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지원센터”라 한다)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③ (생략)

리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실태조사
4. 제15조의4에 따른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보증금반환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5. 그 밖에 빈용기·1회용 컵의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환경부장관은 센터의 운영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임직원이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의2(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조합은-----

-----회수·재활용-----

②·③ (현행과 같음)

<p>④ 유통지원센터는 신용기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기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에 관한 업무 2.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의 사용 3. 신용기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에 관한 실태조사 4. 제15조의4에 따른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신용기보증금반환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5. 그 밖에 신용기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p><삭 제></p>
-----------------------------------------------------------------------------------------------------------------------------------------------------------------------------------------------------------------------------------------------------------------------------------------------------------------------------------------------	--------------------

환경부는 2002~2008년간 자발적 협약을 통해 1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운영하였으나 미반환보증금(환불되지 않은 1회용 컵·용기의 판매금액) 관리가 투명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음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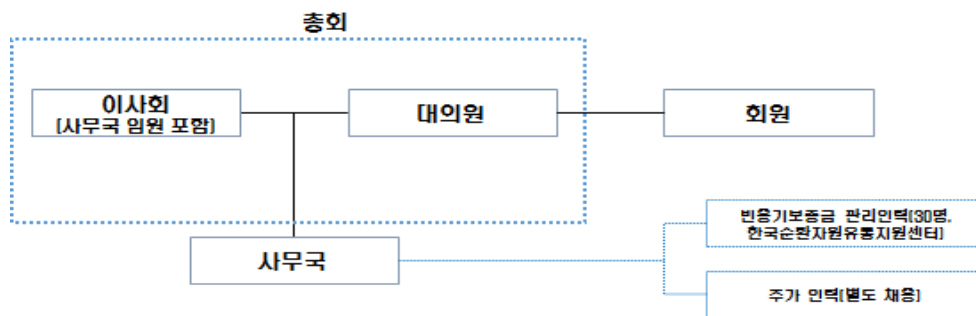
29) 당시 자발적 협약 참여 업체가 미반환보증금을 운영·관리하였는데, 미반환보증금을 기업 홍보 등에 부적절 집행한 사례가 있었음.

< 표 >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운영시 미반환보증금 집행 현황

년도	환불율 (%)	미반환보증금(백만원)			집행내역(백만원)					
		이월액	당해연도	총액	소계	머그컵 인센티브 제공	교육· 홍보	장학금	환경보전 활동	기타
'03	18.9	-	4,738	4,738	2,711	1,266	164	961	59	262
'04	28.2	2,027	4,647	6,674	4,194	1,578	1,496	794	73	253
'05	31.1	2,480	4,757	7,237	5,213	1,299	3,035	733	75	71
'06	37.6	2,024	4,179	6,203	4,392	1,941	1,420	908	70	53
'07	37.2	1,811	4,979	6,790	3,976	355	1,842	1,170	559	50
'08	-	2,814	-	2,814	1,436	-	-	1,386	50	-
'09	-	1,378	-	1,378	1,288	-	-	1,288	-	-
'11	-	90	-	90	90	-	90	-	-	-

따라서 개정안은 보증금대상사업자가 공동으로 제3의 기관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³⁰⁾를 설치하도록 하여(안 제15조의6) 미반환보증금³¹⁾을 통합관리하고, 환경부 소속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³²⁾를 설치(안 제15조의5)하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보증금 관리업무를 감독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봄.

< 그림 > 환경부측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구성(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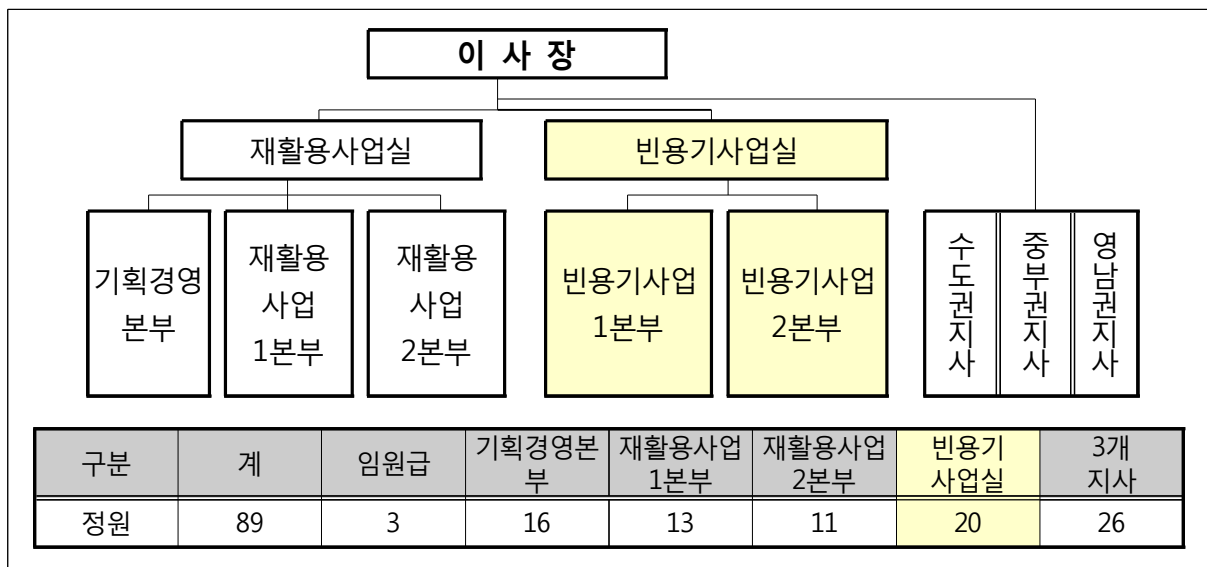
30) 【참고자료 2】 환경부측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안)

31) 현재 운영중인 빈증기보증금의 경우 연간 100억원 내외 발생, 보증금이 인상된 '17년도는 일시적으로 420억원 발생

32) 【참고자료 3】 환경부측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안)

또한, 현행법상 “유통지원센터”는 법 제27조33)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역할과 빈용기 보증금 관리 업무³⁴⁾ 등 서로 다른 내용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유통지원센터 사업 중 빈용기 보증금 관리 업무를 삭제³⁵⁾하여 공제조합과 빈용기 보증금 업무를 분리·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사업 운영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봄.

< 그림 > 현행 유통지원센터 조직체계



33) 법 제27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품별 및 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삭제 <2016.5.29>

34) 법 제28조의2(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등) ④ 유통지원센터는 빈용기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1.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빈용기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에 관한 업무

2.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의 사용

3. 빈용기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에 관한 실태조사

4. 제15조의4에 따른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빈용기보증금반환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5. 그 밖에 빈용기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5) 환경부는 기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빈용기보증금 관리인력을 활용할 예정임(추후 신규 채용 예정).

다만, 빈용기보증금과의 통합·관리 및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설치 관련 아래와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빈용기보증금과 1회용 컵의 보증금 관리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데, 빈용기보증금과 1회용 컵 보증금은 일부 유사점이 있으나 보증금 대상과 유통체계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분리하여 운영해야 할 것임.

둘째, 개정안은 보증금제도의 공익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별도의 감독기구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에서 보증금 관련 종합계획, 미반환보증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위원회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³⁶⁾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동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보증금 제도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해당되는바 이를 법률상 규정하기 보다는 하위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행정안전부도 동 위원회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한 중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통령령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36) 환경부는 동 위원회의 위원장을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으로 하고, 동 위원회 위원을 관련 부처 공무원,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임직원, 시민단체, 자원순환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계획임.

셋째, 개정안의 취지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증금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집행 결과 등을 환경부 장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증금 제도의 공익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봄.

문 의 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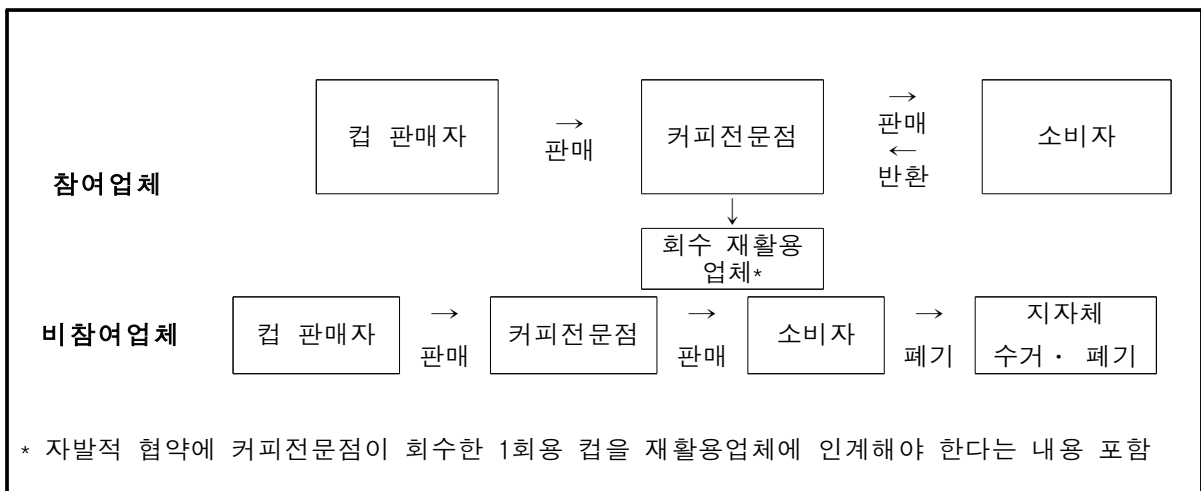
박지희 입법조사관보(788-4849)

【참고자료 1】 2002~2008년 1회용컵 보증금제도 자발적 협약 사례

□ (개요) 39개 브랜드 3,500여 개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이 자발적협약을 통해 1회용 컵을 개당 50~100원에 판매하고, 되가져오는 컵에 대해 동일금액 환불

□ (효과) 1회용품 사용억제, 폐 컵·용기 회수재활용 촉진 및 시민에게 전가되는 도심 청소비용 감소

< 자발적 협약 체결에 따른 1회용 컵 소비·처리 흐름도 >



□ (한계) 제도 효과성 미흡, 미반환 보증금 관리투명성 논란 및 법에 근거하지 않는 국민의 편익침해 등의 비판을 받아 2008년 3월 폐지

< 컵 보증금 환불율 및 미반환 보증금 사용내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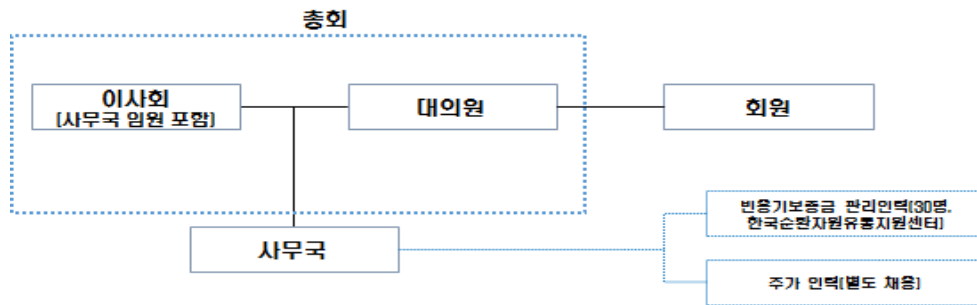
년도	환불율 (%)	미환불금액(백만원)			집행내역(백만원)					
		이월액	당해연도	총액	소계	인센티브 제공	교육·홍보	장학금	환경보전 활동	기타
'03	18.9	-	4,738	4,738	2,711	1,266	164	961	59	262
'04	28.2	2,027	4,647	6,674	4,194	1,578	1,496	794	73	253
'05	31.1	2,480	4,757	7,237	5,213	1,299	3,035	733	75	71
'06	37.6	2,024	4,179	6,203	4,392	1,941	1,420	908	70	53
'07	37.2	1,811	4,979	6,790	3,976	355	1,842	1,170	559	50
'08	-	2,814	-	2,814	1,436	-	-	1,386	50	-
'09	-	1,378	-	1,378	1,288	-	-	1,288	-	-
'11	-	90	-	90	90	-	90	-	-	-

【참고자료 2】 환경부측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안)

□ 구성(안)

- 보증금대상사업자(재사용생산자, 1회용 컵 사용 제품판매사업자)를 회원으로 환경부 허가를 받은 법인(法人)
- 사무국은 기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빈용기보증금 관리인력(30명+추후 신규채용) 활용
- 재원은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반환보증금이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신설)를 통해 보증금 집행 관리강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구성(안)>



□ 역할 및 기능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보증금 반환,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 및 관리, 미반환보증금 집행 및 관리
- 보증금 반환과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실태조사, 기타 회수·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 사업
- 보증금을 통한 자원의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추진

【참고자료 3】 환경부측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안)

□ 신설사유

-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증금(이하 ‘미반환보증금’)의 사용용도와 집행·관리 공익성 강화 필요
- * 현재 운영중인 비용기보증금의 경우 연간 100억원 내외 발생, 보증금이 인상된 ‘17년도는 일시적으로 420억원 발생

□ 구성 및 운영(안)

- (구성) 위원장을 포함,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중앙행정기관, 민간·법인 단체, 전문가 등 7인 이내로 구성(안)
- * 위원장은 ①환경부 자원순환국장, ②관련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민간·법인은 ③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자원순환관련 ④환경단체(환경부 인가), ⑤시민단체(중앙행정기관 인가), 전문가는 ⑥자원순환 관련 학회, 환경 분야 ⑦법률 전문가
- (운영) 사업계획 및 집행결과 검토를 위한 정례회의(11월, 2월), 종합계획 등 필요시 수시회의
- (기능) 미반환보증금의 집행계획 및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보증금 제도 운영에 관한 협의조정
- * ①보증금을 통한 자원의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 검토, ②보증금,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의 부과·징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③미반환보증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④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